

# 1. 예산총칙

2022년도 본예산

제 1 조 2022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| 구 분    |                     | 세입·세출예산총액   | 일시차입한도액   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합 계    |                     | 605,798,837 | 18,173,965 |
| 일반회계   |                     | 555,780,349 | 16,673,410 |
| 특별회계   |                     | 50,018,488  | 1,500,555  |
| 기타특별회계 |                     | 50,018,488  | 1,500,555  |
|        | 공무원아파트특별회계          | 4,355,763   | 130,673    |
|        | 중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 | 4,057,000   | 121,710    |
|        |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         | 97,000      | 2,910      |
|        |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    | 548,000     | 16,440     |
|        |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         | 7,054,827   | 211,645    |
|        | 자활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      | 873,854     | 26,216     |
|        |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         | 694,091     | 20,823     |
|        | 상수도사업특별회계           | 3,879,595   | 116,388    |
|        | 수질개선특별회계            | 21,250,316  | 637,509    |
|        | 농업발전기금특별회계          | 7,208,042   | 216,241    |

제 2 조 2022년도 본예산 세입·세출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서"와 같다.

제 3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"계속비사업조서"와 같다.

제 4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"명시이월사업조서"와 같다.

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의 총액은 30,931,663천원이며, 재해·재난 예비비 23,670,663천원을 포함한다.

제 6 조 2022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25,8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